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호)]

2026.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	**제출연월일**	2026.09.23.
위 원 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 충 열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호)

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08. 27. ~ 2026. 09. 16. (20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Ⅱ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주로 경영안정, 창업 및 자금지원 등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영업 형태의 소상공인 등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소상공인 보호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구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영·창업 중심 지원에서 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까지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이번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는 202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안전물품 지급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9제1항[1]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6[2]에서 정하고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은 상

1)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2)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

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 등으로,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마련된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적·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여, 구청장이 해당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죄예방 지원대상과 개정안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기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정안 검토

가. 안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등)

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23.]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한 기존 지원사업에 범죄예방 분야를 추가하고, 제5호에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안전물품 지급, CCTV·비상벨·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 제5조는 경영상담·교육,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예방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기존 지원 목적을 안전한 영업환경의 조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 및 기존 지원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제5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그 범위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시행 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상을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6에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개정안의 표현만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상위법 제12조의9에 따른 사업과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의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전품이나 CCTV·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 우려의 판단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만으로 특정 사업의 시행이나 재정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뿐만아니라 사업의 실효성, 예산 규모 및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안 제11조는 현행 제11조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현행 제11조의 수당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적용범위와 수당 지급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별 조례에서 동일한 수당 지급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공통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간결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행 제11조를 삭제하더라도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근거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조문 삭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새롭게 마련되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구청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범죄예방 분야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활동 및 현장 대응체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 또한 협력대상을 경찰서에 한정하지 않고 소방서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화재·재난 등 사업장 안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장 대응력과 연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력방법이나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해당 규정은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므로, 조례에서 세부적인 협력절차까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협력체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서·소방서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경영안정·창업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 및 현행 조례의 목적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안 제11조는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인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찰서·소방서·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체계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지원사업의 관계기관 연계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인정됨.

○ 다만, 안 제5조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과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 시행 시 상위법 제12조의9에 따른 사업과구 자체사업의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범죄피해 우려의 판단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안전물품이나 CCTV·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이 실질적인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역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